

황보수정 선생님 「통합민법조문」  
제3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③ (2018-07-16)

민법 [시행 2018.2.1.] [법률 제14965호, 2017.10.31., 일부개정]으로 정오표를 작성하며, 통합민법조문(제3판)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①②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p.168 누락된 제203조 제3항 추가

기존	<p><b>제203조(점유자의 상환청구권)</b></p> <p>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수정	<p><b>제203조(점유자의 상환청구권)</b></p> <p>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.</p>

p.216 제277조 내용 중 중점 삭제

기존	<p><b>제277조(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)</b></p> <p>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·상실함으로써 취득·상실된다.</p>
수정	<p><b>제277조(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)</b></p> <p>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<b>취득상실함</b>으로써 <b>취득상실</b>된다.</p>

p.293 제379조 수정

기존	<p><b>제379조(법정이율)</b></p> <p>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.</p>
수정	<p><b>제379조(법정이율)</b></p> <p>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<b>분</b>으로 한다.</p>

p.356 누락된 제430조 조문 추가

기존	<p><b>제429조(보증채무의 범위)</b></p> <p>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, 위약금,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.</p> <p>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.</p>
수정	<p><b>제429조(보증채무의 범위)</b></p> <p>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, 위약금,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.</p> <p>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30조(목적, 형태상의 부종성)</b></p> <p>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.</p>

p.359 제436조 및 시행일 삭제

기존	<p><b>제436조(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)</b></p> <p>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.</p> <p><b>제436조 삭제</b> &lt;2015.2.3.&gt; [시행일: 2016.2.4.]</p> <p><b>제436조의2(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)</b></p> <p>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...</p>
수정	<p><b>제436조 삭제</b> &lt;2015.2.3.&gt;</p> <p><b>제436조의2(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)</b></p> <p>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...</p>

p.529 제674조와 제674조의2 사이에 '제9절의 2 | 여행계약' 추가

수정	<p><b>제9절의 2   여행계약</b></p> <p><b>제674조의2(여행계약의 의의)</b></p> <p>여행계약은 당사자 ...</p>
----	--

p.613 제826조의 누락된 제3항·제4항(삭제조항) 추가

기존	<p><b>제826조(부부 간의 의무)</b></p> <p>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.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.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.</p>
수정	<p><b>제826조(부부 간의 의무)</b></p> <p>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.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.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.</p> <p>③ 삭제 &lt;2005.3.31.&gt;</p> <p>④ 삭제 &lt;2005.3.31.&gt;</p>

p.614 누락된 제827조 조문박스 추가

기존	<p><b>제826조의2(성년의제)</b></p> <p>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</p> <p>기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,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(○) &lt;사시 2007&gt;</p>
수정	<p><b>제826조의2(성년의제)</b></p> <p>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</p> <p><b>제827조(부부 간의 가사대리권)</b></p> <p>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.</p> <p>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/p> <p>기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,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(○) &lt;사시 2007&gt;</p>

p.634 누락된 제853조(삭제조문) 추가

기존	<p><b>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</b>                 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(親生子)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</p> <p><b>제854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)</b>                 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</p>
수정	<p><b>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</b>                 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(親生子)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</p> <p><b>제853조 삭제 &lt;2005.3.31.&gt;</b></p> <p><b>제854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)</b>                 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</p>

p.644 제891조의 누락된 제2항 추가

기존	<p><b>제891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</b></p> <p>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 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제2호, 제 870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</p>
수정	<p><b>제891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</b></p> <p>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 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제2호, 제 870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</p>

p.655 제3관 제목 수정

기존	<b>제3관 친권의 상실</b>
수정	<b>제3관 친권의 상실,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</b>

p.675 제974조의 누락된 2.(삭제조항) 추가

기존	<p><b>제974조(부양의무)</b>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.                  1.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                3. 기타 친족 간(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)</p>
수정	<p><b>제974조(부양의무)</b>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.                  1.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                2. 삭제 &lt;1990.1.13.&gt;                  3. 기타 친족 간(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)</p>

p.685 누락된 제1002조(삭제조문) 추가

기존	<p><b>제1001조(대습상속)</b>                 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. &lt;개정 2014.12.30.&gt;</p> <p><b>제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</b>                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</p>
수정	<p><b>제1001조(대습상속)</b>                 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. &lt;개정 2014.12.30.&gt;</p> <p><b>제1002조 삭제 &lt;1990.1.13.&gt;</b></p> <p><b>제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</b>                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</p>

p.691 제1009조의 누락된 제3항(삭제조항) 추가

기 존	<p><b>제1009조(법정상속분)</b></p> <p>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.</p> <p>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,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.</p>
수 정	<p><b>제1009조(법정상속분)</b></p> <p>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.</p> <p>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,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.</p> <p>③ 삭제 &lt;1990.1.13.&gt;</p>